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해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정기선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그 이용 화주만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유, 철광석, 석탄 등 주요 원자재를 운송하는 부정기선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그 이용 화주가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가경제 발전과 서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원자재 해상운송분야에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화주 상생을 통해 국가 수출입 해상물류망을 안정적으로 확립하고 글로벌 물류 대란과 같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법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대상으로 부정기선사를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대상으로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추가(안 제23조의2제2호)

- 1) 정기선사와 그 이용 화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선화주 상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기선사를 우수선화주 인증기업 제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제도 도입 목적 달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 중 “정기”를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의 주체 및 대상)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생 략)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u>정기</u>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23조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의 주체 및 대상) ----- ----- ----- -----. 1. (현행과 같음) 2. ----- <u>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u> <u>부정기</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722